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14

발의연월일: 2020. 6. 29.

발 의 자:이학영・이장섭・임호선

우원식 · 김교흥 · 고용진

신동근 · 홍익표 · 이동주

백혜련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상 행정처분 등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권한 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 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 등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다른 금융 관련 법률과 달리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.

이에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검사·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, 금융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 신설).

법률 제 호
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권한의 위탁)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0조(권한의 위탁) 금융위원회는
	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
	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	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
	<u>다.</u>